[요약본]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일 : 2020. 7. 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김경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0. 7. 21.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 론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소(訴)를 제기하게 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판결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법원은 재판을 아무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였더라도 채무자가 판결을 수용하여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민사판결의 집행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채권자에게만 맡겨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스스로 찾아내어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권자는 국가기관과는 달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탐지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스스로 찾기는 매우 힘든 일임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강제집행의 실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제도(동법 제74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에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동법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정보수집제도를 갖추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재산개시제도(財産開示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 4. 1.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정보수집제도를 신설하는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우리의 재산명시제도에 상당하는 수단으로 법원이 관여하여 실시되는 '집행보조절차(supplementary proceedings, proceedings supplementary)'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주도적으로 실시되는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post-trial discove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채무자의 거주지 파악제도, 재산공개제도와 채무자목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수집절차로 재산조회제도를, 그리고 간접적인 이행강제제도로 채무자에게 부가금을 부과하는 아스트렝트(Astreinte)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재산탐색제도로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보고제도와 제3자 조회제도를 두고 있고,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제도로 신용징계제도와 회계감사제도, 출국금지명령제도, 고액소비 제한명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도를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에서 언급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에서의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내용의 채권에 대한 본래급부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러한 절차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간접강제이다. 따라서 위 국가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제도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 제도의 개선에 대한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제2장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

I.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민사집행법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

가집행이 붙은 집행권원(민사소송법 제213조 참조)을 재산명시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감치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어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가집행이 붙은 집행권원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참조), 그 강제집행에 의하여 상급심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매각이 완료되어 상급심에서 그 결과가 원고의 패소 확정이 되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가집행 제도를 인정하는 한 채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이다. 둘째,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보전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채무자가 패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의 처분 또는 은닉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II. 재산명시 대상의 시적 범위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채무자가 이미 처분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는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동법 동조 동항 제2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이 그것이다.

재산명시절차는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전이되어 확정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기간은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더라도 재판의 장기화로 그 판결의 확정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III. 재산명시에서 소극재산의 신고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 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위에서 살펴본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채무(假裝債務)의 작출(作出)이 문제된다고 한다. 즉,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처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가장채무를 허위로 만든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가장채무를 작출하게 되면 선의의 채권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산명시가 명해지는 시점의 소극재산을 신고하고 그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IV. 감치제도의 실효성

감치제도는 감치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수감생활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절차에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현행법은 감치에 처해진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동법 제68조 제5항). 또, 채무자가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8조 제6항).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위 규정은 인신구속과 직접 관련되는 형사소송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둘째, 감치에 처해진 채무자라도 극히 형식적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만 하면 바로 석방되므로 감치처분의 실질적인 위하력(威嚇力)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문제점

I.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동법 제72조 제4항),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일정한 등록 원인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직권으로 채무자목록(Schuldnerverzeichnis)의 등재를 명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 제882c조 제1항]. 이 등재결정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비치는 각 주에 대하여 1개의 중앙집행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채무자목록은 '강제집행의 목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독일 각 주의 중앙집행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인터넷상의 신청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동법 제882h조 제1항).

위와 같이 독일의 경우 각 주별로 중앙집행법원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열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관리하고 그 법원에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II.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에 대하여 열람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열람하는 것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복사까지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제3절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

I. 재산명시절차 전치주의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한다. 즉,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의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여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재산조회 신청은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명시제도는 이론상 타당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서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아무런 소득 없이 집행의 지연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소명을 하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채권집행 실무에서는 재산조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5~20여 개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하여 그 중 하나 또는 몇 개의 금융기관에서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그 계좌에 추가로 집행을 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I. 금융재산의 개별조회

재산조회절차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인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자동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 참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각 조회할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그 대상기관별로 각각 조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국세청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일괄 조회'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참조), 이 일괄조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일괄조회 대상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3장 각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재산탐지절차

I. 일본

일본의 재산개시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집행권원 가운데 가집행 선언부 판결(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호, 제4호), 집행증서(동조 제5호)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불독촉(支拂督促)(동조 제7호) 등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일본 구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즉, 개정 전 민사집행법(2003년법)에서는 가집행 선언부 판결, 지급독촉, 집행증서는 재산개시절차의 신청이 가능한 집행권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법 동조 동항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집행권원이라면 어느 종류의 것이라도 이를 토대로 재산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 위 법률 개정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 취득 제도로 '채무자의 부동산정보 취득', '채무자의 급여채권 정보 취득',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의 취득' 등이 도입되었다.

2019년의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 취득 제도 중 '채무자의 부동산정보 취득',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의 취득'은 우리의 재산조회제도와 매우 유사하여 특별할 것은 없지만, '채무자의 급여채권 정보 취득'은 채

무자의 근무처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급여 압류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경우는 채무자의 근무처를 알 수 있지만, 개인 채권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 최근에 와서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근무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II. 미국

미국의 경우 판결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로 집행보조절차(심문실시명령), 판결 후 개시절차(심문절차)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판결채권자는 금전채권 집행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 판결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해당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심판인(referee)의 면전에서 '심문실시명령(order of examination)'을 신청할 수 있는데[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이하 CA CCP라고 함) § 708.110(a)], 심문실시명령에는 심문절차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표시하는 것 외에 심문절차의 실시 날짜 및 실시 장소 및 상대방에 대한 출석명령의 문언과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arrest), 법원모욕(contempt of court), 판결채권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 합리적인 액수(reasonable attorney's fee)의 부담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CA CCP § 708.120(c)]. 심문실시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면 명령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판결채무자의 재산(property) 혹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이 설정된다. 이 같은 심문절차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판결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이나 법원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제3자까지도 심문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판결 후 개시절차(심문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금전채권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판결채무자에게 판결 후 개시절차에 의한 '서면심문(written interrogatories)'을 할 수 있는 절차이다[CA CCP § 708.020(a)]. 이 서면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 간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CA CCP § 2030.280(a)]. 판결 후 개시절차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판결채무자가 적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판결채무자)의 이의권 상실, 법원의 강제명령(compelling order)의 발령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모욕(contempt)의 제재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III. 독일

독일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로 재산명시제도와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의 재산명시의 요건으로서 집행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필요하다(독일 민사소송법 제802a조 제2항 제2호).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가 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증서(동법 제794조 제1항 제5호)도 포함된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구술로 신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관이 전자문서로 재산목록(Vermögensverzeichnis)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802f조 제5항 제1문). 집행관은 재산목록을 중앙집행법원에 보관하며, 채권자에게 그 사본을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목록은 각 주(州)의 중앙집행법원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한다. 재산목록은

모든 주에서 강제집행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있다(동법 제802k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다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는 집행관을 비롯한 기타 강제집행기관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사인(私人)은 재산목록에 접근할 수 없다.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취득 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관은 주민등록청(Meldebehörde),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법률상 연금보험의 보험자(Träger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에서 채무자의 주소와 거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방자동차청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755조 참조). 또 법률상의 연금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채무자와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현 사용자에 관한 정보 취득, 연방중앙세무청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계좌정보 공개를 촉탁할 수 있다(동법 제802l조 제1항).

Ⅳ. 프랑스

프랑스의 재산조회절차는 2011년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 공기업, 공공시설, 행정부 하의 조직이나 기관 등은 집행관의 집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프랑스 민사집행법 제L.152-1조). 조회 대상 정보는 ① 채무자의 주소, ② 채무자의 고용주, 청산 가능하고 지불기한이 도래한 금원의 제3채무자 또는 수탁인의 신상정보 및 주소, ③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다(동법 제L.152-1조).

또한 집행관은 ① 해당 규정들이 언급한 관공서, 기업,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② 이들 기관들이 지정한 하부 기관이나 부서 또는 은행 계좌파일을 관리하는 중심부서 및 ③ 재정경제부에 소속된 유사 기관이나 부서에도 채무자 계좌에 대한 정보청구가 가능하다(동법 제R.152-1조). 프랑스의 재산조회절차는 ① 집행관이 조회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의 고용주 또는 청산 가능하고 지불기한이 도래한 금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조회할 수 있는 점, ③ 관공서, 기업,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의 특색이 있다.

Ⅴ. 중국

중국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로 재산보고제도와 제3자 조회제도를 두고 있으며, 온라인 재산조사·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집행채무자의 재산보고제도는 법원의 '재산보고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재산보고명령에는 보고할 재산의 범위, 보고기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알리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 중 재산조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 재산보고명령은 전면적인 재산보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탈피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절차상 의미 있는 것은 채무자에 의한 재산보고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보고를 한 후에도 보고된 재산에 채권자의 청구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위 규정 제7조).

중국 제도에서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가장 드러나는 것은 제3자 조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집행기관이 재산조사의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는 중국법은 예전의 실무에서 집행법관 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있을 법한 기관으로 실제로 나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이에 의하면 과태료 또는 구류의 제재 외에도 집행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수사명령(搜查

命令)을 내려 피집행인의 신체, 주소지나 재산은닉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절 재산탐지절차의 불응시의 제재

I. 일본

일본의 재산개시절차와 관련하여 2019년의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개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불출석·선서 거부 혹은 선서 후의 정당 이유 없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일본 구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에 대하여 경미한 질서벌인 과태료로는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개정법(2020. 4. 1. 시행)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형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로 전환하였다(일본 민사집행법 제213조 제1항 참조).

II. 미국

미국의 집행보조절차(심문실시명령)의 경우 심문실시명령의 송달이 적법한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행해졌음에도 출석을 명령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 불출석 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법원모욕(contempt)으로 체포영장(warrant for arrest)을 발부하고 수감한다[CA CCP § 708.170(a)(1)]. 또한,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없을 때에는 판결채권자가 심문절차에 지출된 상당 비용의 지불을 명령하는 등의 제재를 불출석한 자에게 부과하며[CA CCP § 708.170(a)(2)], 출석 의무자가 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했을 때에는 통상적인 증인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결 후 개시절차(심문절차)에서 판결채무자가 적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판결채무자)은 간편한 방법으로 답변 또는 답변할 권리 및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CA CCP § 2030.290(a), § 2031.300(a)], 판결 후 개시절차를 요구한 자(판결채권자)는 강제명령(compelling order)의 발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강제명령을 발령해도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유공개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모욕(contempt)의 제재를 할 수 있다[CA CCP § 2030.290(b), § 2031.300(b)].

III. 독일

독일의 경우 재산정보 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정보의 신고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강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구금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802g조 제1항 제1문). 이때 채무자의 구금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동법 제802j조 제1항). 채무자가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받아 재산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802i조 제1항).

또한, 고의로 선서에 갈음하는 허위보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며(허위보증죄, 형법 제156조), 과실에 의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과실허위보증죄, 형법 제161조 제1항).

IV. 중국

중국은 채무자의 재산정보 탐지를 위하여 재산보고제도와 제3자 조회제도를 두고 있는데, 재산보고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보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 채무자의 대표자, 채무자

의 주 책임자 또는 직접 보고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또는 구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241조 후단). 구류기간은 15일 이하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15조 제2항), 구류기간 동안 피구류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한 전에 구류를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115조 제3항).

제3자 조회제도는 집행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수사명령(搜查命令)을 내려 피집행인의 신체, 주소지나 재산은닉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절차이다(동법 제248조).

제3절 채무불이행자명부 공개 방법

우리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유사한 제도는 독일의 채무자목록(Schuldnerverzeichnis) 제도인데, 이는 신용이 불량한 채무자를 등록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위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각 구법원(區法院, Amtsgericht)별로 작성되는 채무자목록에 등록된 정보는 Schufa Holding AG와 같은 민간 채무자목록 작성자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채무자목록은 각 주에 대해서 1개의 중앙집행법원이 작성 및 관리하며, 채무자목록의 내용은 통일적으로 모든 주의 정보를 취합한 강제집행포털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882h조 제1항 제1문).

독일의 채무자목록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전술한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채무자목록을 중앙집행법원(Zentrales Vollstreckungsgericht)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각 주마다 특정 구법원을 중앙집행법원으로 지정하고, 모든 주를 통합하여 강제집행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강제집행포털을 통해서 모든 주에서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채무자목록을 전자적으로 열람 및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절 간접적 강제수단

I. 미국

미국의 경우 제도 자체는 강제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간접강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판결선취특권, Judgment Lien), 본래는 직접강제의 수단이지만 간접강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집행보조인제도, Keeper Levy) 등이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되는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은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금전채권 판결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 가능한 연방법원의 금전채권판결에 대해서도 주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다[CA CCP § 697.060].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에 대한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 on real property)"과 "동산에 대한 판결선취특권(Judgment Lien on personal property)"을 인정하고 있다.여기에서 판결선취특권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정담보이지만, 현실의 기능으로서 판결채무자에 의한 임의변제나 화해 협의를 촉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미국에서 간접강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집행보조인(Keeper Levy)제도이다. 이것은 집행관(levying officer)이 임명한 키퍼(keeper)라 불리는 집행보조인을 판결채무자의 사업 또는 업무에 임장시켜 매출수익 등의 점유를 취득시키는 형태의 압류이다. 집행보조인(Keeper Levy)제도는 직접강제의 일종이지만, 그와 동시에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효성 높은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건장한 집행보조인(Keeper Levy)

이 장시간에 걸쳐서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서 고객이 보는 가운데 매출금 등을 압류하는 것은 판결채무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체면이나 신용도 현저하게 저하되므로 임의변제나 화해 협의를 촉구하는 강한 심리적인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II. 독일

독일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채무자목록(Schuldnerverzeichnis)제도가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각 구법원별로 작성되는 채무자목록에 등록된 정보는 Schufa Holding AG와 같은 민간 채무자목록 작성자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채무자목록에 등록되면 사실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의 간접강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상당히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채무자목록을 각 주에 대해서 1개의 중앙집행법원이 작성 및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III.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간접적 강제수단인 '아스트렝트(Astreinte) 제도'가 있다. 아스트렝트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판사가 주된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금전이행명령"을 가리킨다.

프랑스 민법 제1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아스트렝트(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아스트렝트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금전이행명령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원래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특색이 있으며, 자발적 이행과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지점에 위치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IV. 중국

중국의 경우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신용징계제도'와 '회계감사제도'가 있으며, 비금전적 간접강제제도로 '출국금지명령', '고액소비 제한명령'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중 악성 피집행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징계 방법은 집행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행채무자를 '악성 피집행인'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용상실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표하고 심리적 · 여론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 밖에 법원 이외의 기관과 연계하여 대출심사, 행정인가, 정부조달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신용상실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회계감사는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의한 재산의 은닉 · 처분, 영업소 신설 또는 타사 출자 등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청원에 따라 외부 회계사무소에 채무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한다.

비금전적 간접강제 중 출국금지명령은 집행법원이 출국금지명령을 발령할 경우 경찰에 출국금지명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입출국업무를 소관하는 경찰(공안)이 공항 등에 있어서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출국을 저지하는 제도이며, 고액소비 제한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발령할 경우 법원의 지정된 소비항목의 상품 · 역무 제공자가 그 소비를 거부하는 간접강제이다.

제4장 우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개설

위에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의 민사집행제도 중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에 대하여 개관하며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나름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

I.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확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할 당시 '가집행 선고부 집행권원' 을 제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이런 의견의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아 취소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위의 견해는 재판의 장기화로 최종심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면 소장을 받고 사해행위의 의사로 처분한 재산도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소정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 또는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보장되어 있는 점, 상소심 진행 중에 가집행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타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어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재산명시절차를 도입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제도를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집행 선고부 집행권원' 까지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 재산명시 대상 재산의 시적 범위 연장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이다. 일정 기간 내의 재산처분은 ①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②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③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 선물은 제외)이다.

위 규정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장채무(假裝債務)의 작출(作出) 문제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처분한 재산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신고한 재산목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법상 법률행위(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재산이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은 이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민법의 기간과 같이 이를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III. 소극재산의 신고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

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는 일정한 재산의 유상양도와 무상처분, 즉 적극재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장채무(假裝債務)를 작출(作出)하게 되면, 선의의 채권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명시가 명해지는 시점의 소극재산을 신고하고 그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채무의 신고는 재산목록 제출 시점에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사실상 차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재산명시 대상 재산의 시적 범위의 연장과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재산목록 제출 시로부터 5년 전까지 형성된 소극재산도 신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IV. 감치제도의 개선

현행법은 감치에 처해진 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즉, 채무자에게 10일의 감치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지금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감치집행 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우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시기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명시기일을 열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불법구금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을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채무자가 변제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감치 중인 채무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제3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개선방안

I.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온라인 통합 관리

우리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반면, 독일은 채무자목록(Schuldnerverzeichnis)의 등록명령이 발령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집행관은 등록명령을 즉시 중앙집행법원(Zentrales Vollstreckungsgericht)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독일 민사소송법 제882d조 제1항 제1문 내지 제3문). 채무자목록은 각 주에 대해서 1개의 중앙집행법원이 작성 및 관리하며, 채무자목록의 내용은 통일적으로 모든 주의 정보를 취합한 강제집행포털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동법 제882h조 제1항 제1문).

우리 법원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한 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면 관할법원과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II. 열람 · 복사의 편리성 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 · 등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한 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추가로 열람 · 출력시스템을 만든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가까운 법원에 가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목록의 복사(출력)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독일과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재산조회제도의 개선방안

I. 근무처(사업장) 조회제도 신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압류나 금융채권의 압류라고 할 수 있다. 금융채권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채무자의 근무처를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 중 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급여채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법원이 시 · 정 · 촌(市 · 町 · 村)이나 후생연금사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근무처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다(일본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참조). 다만, 채무자의 근무처에 대한 정보는 채무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재산개시절차의 전치(前置)를 요구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 그 신청권자를 부양 의무 등에 관련된 청구권 또는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의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에 근거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였다(동법 제206조 제1항). 한편, 독일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3자정보(Ausk?nfte Dritter)의 제공을 요청하는 제도를 채무자의 재산명시제도에 대한 보충적인 절차로 운용하고 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알지 못하는 채권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극단적으로는 특정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독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을 조회처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시 재산명시절차 전치주의 폐지

앞에서 본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에서 도입한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취득 절차는 압류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계좌정보(금융기관, 취급지점, 예금의 종별,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민사집행규칙 제133조 제2항 참조). 다만, 재산개시절차의 전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개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채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채권집행 실무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참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① 채권자로서는 번거롭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부담,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의 소환을 받게 되면 손쉽게 금융재산을 회수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권 채권자들은 번거로운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5~20여 개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쉽게 채무자가 회수해 버릴 위험성이 높은 금융재산에 한정하여 이러한 특례를 도입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명시절차 없이 재산조회를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II. 금융재산의 통합조회절차 도입

재산조회절차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인데, 채권자들은 각 조회할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그 대상기관별로 각각 조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재산의 통합조회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형태를 상정해 본 것이다. 하지만, 금융재산 통합조회절차가 실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다양성과 독자적인 업무 시스템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며, 통합조회 시스템의 구축 필요 등 상당히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 분쟁이 자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 및 법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 수고를 들여 판결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자진이행이나 강제집행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참고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고,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신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채권자들의 판결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채무자에게는 간접적인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제한, 재산명시 대상의 시적 범위 문제, 감치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법원의 제한과 명부의 복사 문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의 전치 문제, 금융재산의 개별조회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제도를 고찰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19년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재산개시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확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 취득 제도 신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법원이 개입하는 '집행보조절차(심문실시명령)'와 우선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는 '판결 후 개시절차'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채무자 재산목록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열람하는 방식 등 변화하는 IT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보고제도, 제3자 조회제도 등 사회주의적인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제도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재산명시제도에 있어서는 '가집행 선고부 집행권원'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명시 대상 재산을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장채무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목록 제출 시로부터 5년 전까지 형성된 소극재산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현행 감치제도에서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명시기일을 여는 것으로 제언을 하였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한 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열람·출력시스템을 개발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가까운 법원에 가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는 2019년에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 중 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급여채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주목하여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을 조회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명시절차 없이 재산조회를 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산조회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각 조회할 금융기관을 선별하고, 그 대상기관별로 각각 조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점들이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IT환경이 계속 발전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도 도입 시 채권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결문이 추상적인 문자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판결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 그 내용대로 실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사법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